

김해시 산업단지 현황

■ 김해시 산업단지 현황(준공)

농공단지		일반산업단지	
진영농공단지	본산농공단지	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	테크노일반산업단지
나전농공단지	내삼농공단지	오척일반산업단지	주호일반산업단지
병동농공단지	봉림농공단지	덕암일반산업단지	명동일반산업단지
하계농공단지	안하농공단지	이노비즈일반산업단지	서김해일반산업단지
		병동일반산업단지	

■ 관리기관 : 산업(농공)단지 김해시 055-330-098(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제외)

■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관리기관 : 한국산업단지공단 070-8895-7799

■ 기업체협의회

진영농공단지	342-5037	나전농공단지	342-5037	내삼농공단지	338-2335
병동농공단지	345-6900	하계농공단지	343-7030	안하농공단지	346-1305
골든루트 일반산업단지	070-8895- 7794	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	336-6666	덕암 일반산업단지	337-3886

* 서식은 김해시 투자유치과 자료실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조

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

■ 신청기관 : 김해시 투자유치과(055-330-0981)

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연락

■ 신청기간 : 산업용지를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[산업단지 내 입주한 모든 기업체(임대포함)]

■ 공장의 건설 : 입주계약 후 2년 이내 건설

■ 절 차

입주계약신청

■ 신청서류

1.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 2. 사업계획서 3. 사업자등록증 등

입주심사

■ 입주자격 및 업종 검토

(산업단지별 지구단위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검토)

입주계약체결

■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처리

* 서식은 김해시 투자유치과 자료실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조

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

■ 신청기관 : 김해시 도시개발과(055-330-0981)

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연락

■ 신청기간: 회사명, 대표자, 업종, 부지, 건축면적 등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신청

■ 절 차

입주(변경)계약신청

■ 신청서류
1. 산업단지입주(계약)신청서. 2. 사업계획서 등

입 주 심 사

■ 입주자격 및 업종 검토
(산업단지별 지구단위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검토)

입주(변경)계약 체결

■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처리

* 서식은 김해시 투자유치과 자료실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조

공장설립등의 완료(사업개시)신고

★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및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지나야 처분제한 기간이 만료 됨. 또한 일부임대 가능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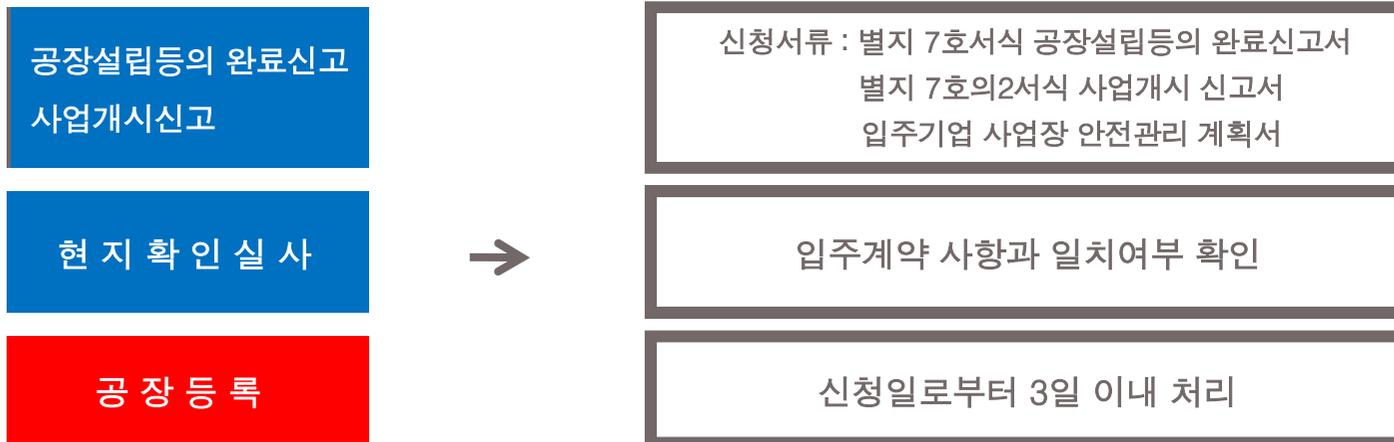
■ 신청기관 : 김해시 허가과 및 투자유치과

■ 신청기간 : 기계,장치 설치일로부터 2개월 이내(임대업체 포함)

■ 구분

제조업	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	허가과(330-3691)
비제조업	사업개시신고	투자유치과(330-0981)

■ 절차



* 서식은 김해시 투자유치과 자료실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조

산업단지 공장 등의 임대(전체임대 불가)

- 신청기관 : 김해시(골든루트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김해지사)
- 신청기간 : 공장등록 및 사업개시신고 이후 (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승인 이후) 임대하기 전 임대신고
- 절차



* 서식은 김해시 투자유치과 자료실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조

산업용지(공장) 등의 처분(매매)

■ 신청기관 : 김해시 투자유치과

■ 처분방법

- 처분신청 : 입주계약 또는 공장등록 후 5년 이내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
- 처분신고 : 공장등록 후 5년 경과 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

■ 절차



산업(농공)단지 입주계약 흐름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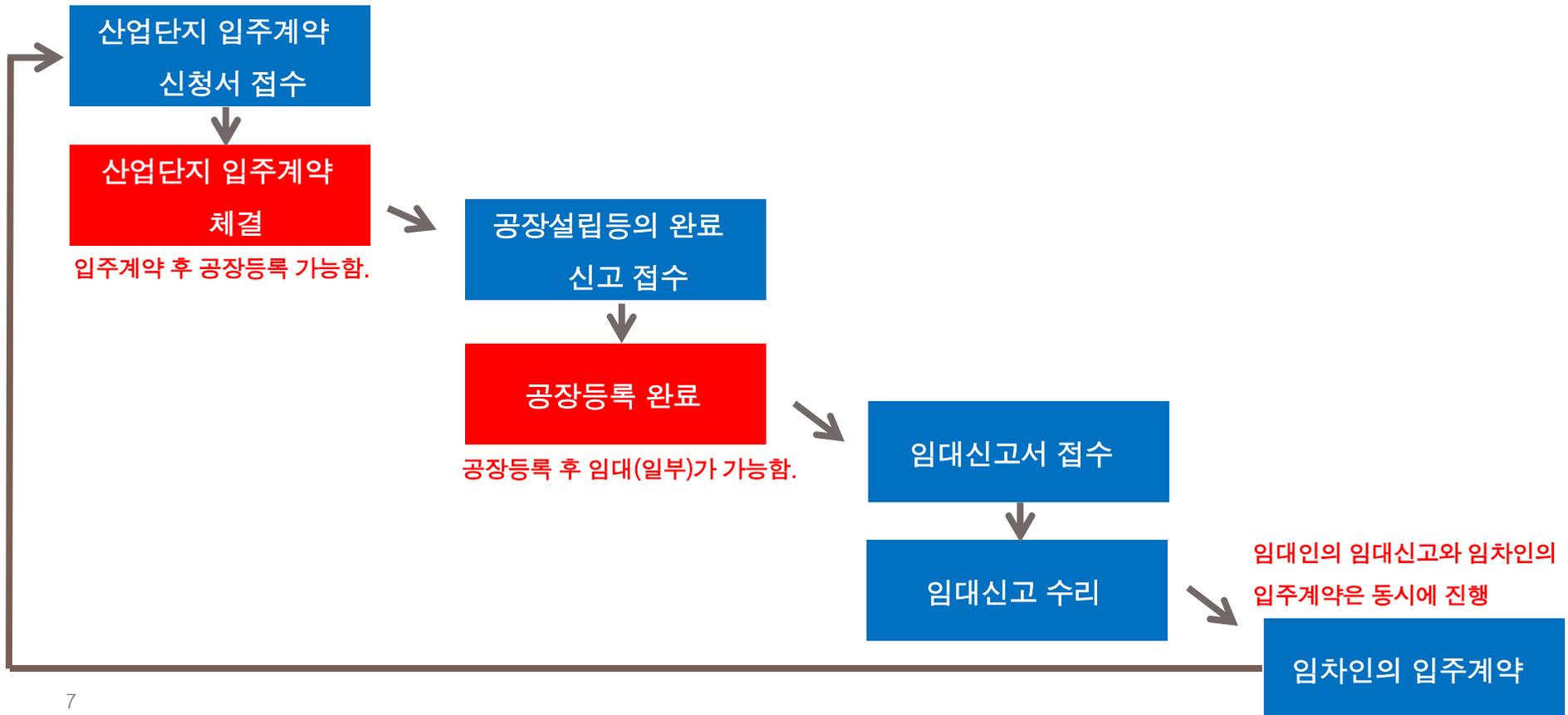
입주계약 ~ 임차인의 입주계약까지 전체 흐름도이며,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모든 기업체(임대포함)는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.

■ 관리기관 및 관리권자 : 김해시, 한국산업단지공단

➡ 입주계약

➡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

➡ 임대인의 임대신고 및 임차인의 입주계약은 동시에 진행



산업(농공)단지 입주관련 법률 요약

구분	대상자	신고(신청)시기	구비서류	관련법 조항	벌칙 및 과태료
입주계약신청	산업단지 내에서 제조업 및 그 외 사업을 하려는 자	- 산업용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을 취득(분양포함) 전	- 입주계약신청서 - 사업계획서 - 법인등기부등본 - 그 외 증빙서류	- 법 제38조 제1항 - 법 제38조 제3항	- 법 제5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입주계약 변경 신청	입주업체	- 업종 변경 전 - 사업 및 사업내용 변경 시 - 건축면적 20% 이상 변경 시 - 대표자, 회사명 변경시 - 법인전환, 상속 합병 등으로 인한 변경 시	- 입주계약(변경) 신청서 - 사업계획서 - 변경사황을 증명하는 서류	- 법 제38조 제2항	- 법 제53조 제4호 1천5백만원 이하 벌금 - 법 제55조 제2항 2백만원 이하의 벌금 - 법 제53조 제4호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
처분신청	입주업체 및 임대사업자	- 산업용지 공장등록 전 또는 후 5년 이내 처분코자 할 때	- 처분신청서 -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 등본 - 공장 등 건축물의 감정평가서	- 법제39조 - 법 제38조의 2	- 법 제52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
처분신고	양도자	-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공장등록 5년 후 처분코자 할 때	- 처분신고서 -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- 토지, 건물 등기부 등본	- 법 제39조	- 법 제55조 제1항 제2호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
	양수입주자	- 소유권 이전 전 입주계약 신청	- 입주계약신청서 - 사업계획서 - 양수도에 관한 계약서 - 그 외 증빙서류	- 법 제38조 제1항 - 법 제38조 제3항	- 법 제52조 제2항 제5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임대신고	임대사업자	- 공장등록 및 사업개시 신고 후 관리 기관에 임대신고서 제출	- 임대신고서 - 임대차계약서 사본 - 토지 또는 등기부 등본	- 법 제38조의 2 제1항	- 법 제55조 제1항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
	임차입주자	- 임대차 계약 후 임대받기 전 미리 입주계약 신청	- 입주계약신청서 - 사업계획서 - 법인등기부등본 등	- 법 제38조 제1항 - 법 제38조 제3항	- 법 제5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 등의 취득	제조업 입주업체	- 1년 이내 입주계약 체결	- 입주계약신청서 - 사업계획서 - 법인등기부등본 - 그 외 증빙서류	- 법 제40조	- 법 제55조 제1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★ 본 안내서는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김해시 투자유치과에서 만들었으며, 인허가 절차 진행 시 사전에 문의하여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